#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85

발의연월일: 2020. 9. 11.

발 의 자: 김주영·윤준병·이용빈

양기대 • 윤건영 • 권칠승

이장섭 · 윤영찬 · 장경태

김정호 · 이용우 의원

(11일)

### 제안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인 국고보조금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음.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보조금 관리를 실현함은 물론,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012년부터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실시해왔으나 실제로 그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안 반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 하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 나. 현행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만 설립 근거를 두고 있음.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는 보조금의 지급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심의로 볼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결기관인 위원회에 준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5조의2 신설).
- 다. 현행법에서는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부정수 급자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보조금 교부 제한 기간을 2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31조의2제1항).

#### 법률 제 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결과"를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로 한다.

제2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보조금관리위원회)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보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보조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결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2.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타당성 확인에 관한 사항
  - 3. 보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운 영과 보조사업의 정비에 관한 사항
  - 4.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 1.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 람
- 2. 보조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민간 위원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2년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39조의4 중 "제26조의7제4항"을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6조의7제4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다음 회계연도의 국회 제출 예 산안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 ③ (현행과 같
승)
<b>4</b>
<u>결</u>
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u>정도</u>
제15조의2(보조금관리위원회)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
속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1. 보조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
의 결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
정 등의 타당성 확인에 관한
<u> </u>
3. 보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

- 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운영과 보조사업의 정비

   에 관한 사항
- 4.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

   합관리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 정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중앙관 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장 관이 임명하는 사람
- 2. 보조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2명 이내의민간 위원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 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 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 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

  - -----<u>경우에는 2년 이내의</u>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 ④ (생 략)

제3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저의제) 제26조의7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네3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
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
원이 아닌 위원과 제26조의7제
<u>4 ট্ট</u>